

거주밀도(제2조제2항 본문,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 관련)

용도	사용형태	거주밀도 (명/㎡)
1. 문화· 집회	가. 좌석이 있는 극장·회의장·전시장[로비·홀·전실(前室)을 포함한다]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	n
	1) 고정식 좌석	1.30
	2) 이동식 좌석	2.60
	3) 입석식	1.80
	나. 좌석이 없는 극장·회의장·전시장(로비·홀·전실을 포함한다)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	1.50
	다. 회의실	0.70
	라. 무대	1.00
	마. 게임제공업	1.70
	바. 나이트클럽	0.70
	사. 전시장(산업전시장)	
2. 판매	가. 매장	0.50
	나. 연속식 점포	
	1) 매장	0.50
	2) 통로	0.25
	다. 창고 및 배송공간	0.37
3. 운수	라. 음식점(레스토랑)·바·카페	1.00
	여객터미널, 철도시설, 공항시설, 항만시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운수시설	0.37
4. 업무	가. 사무실이 높이 60m 초과하는 부분에 위치	1.25
	나. 사무실이 높이 60m 이하 부분에 위치	0.25
5. 숙박	가. 공동주택	R+1
	나. 호텔, 숙박시설	0.05
6. 유원	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, 일반테마파크업, 기타테마파크업	0.50
7. 교육	가. 도서관	
	1) 서고·통로	0.10
	2) 열람실	0.21
	나. 학교	
	1) 교실	0.52
8. 운동	2) 그 밖의 시설	0.21
	운동시설	0.21
9. 의료	가. 입원치료구역	0.04
	나. 수면구역(숙소 등)	0.09

10. 보육	보호시설(아동 관련 시설, 노인복지시설 등)	0.30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

비고

1. 둘 이상의 용도·사용형태로 사용되는 층의 거주밀도는 용도·사용형태별 거주 밀도에 해당 용도·사용형태의 면적이 해당 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각각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정한다.
2. “n”은 좌석 수를 말한다.
3. 위 표 제2호나목의 “연속식 점포”란 벽체를 연속으로 맞대거나 복도를 공유하고 있는 점포 수가 둘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
4. “R”은 세대별 방의 개수를 말한다.
5. 위 표의 사용형태에 해당하는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